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검 토 안 건	제 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구청장

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장애인정책과)

○ 제안일: 2026. 11. 10.

○ 회부일: 2026. 11. 12. (의안번호: 26-114)

2. 제안이유

○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신청·결정(안 제5조~제6조)

라. 의무사항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10. 15. ~ 11. 4.(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보호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근거를,
-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요건 및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지원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부정수급 및 보조기기의 양도·폐기 등에 따른 환수 근거 및 지원사업 홍보와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행 보조기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여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휠체어 승하차 이동기기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만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시)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제고와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의 기준은 객관적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안 제7조 의무사항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차량의 매각·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정책과	김희선 (8880)	代조현우 (1681)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제4조(지원내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7. 1. ~ 2031. 12.

나. 1인 지원액 최대 10,000천원, 연간 4대 지원

다. 홍보비 및 심사위원 수당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구비	41,200	42,200	43,300	44,510	45,841	217,051
	소계(b)	41,200	42,200	43,300	44,510	45,841	217,051
□ 총 비용(a-b)		41,200	42,200	43,300	44,510	45,841	217,051

- 보조기기 지원품목 물가상승률 10%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41,200	42,200	43,300	44,510	45,841	217,051
합계	41,200	42,200	43,300	44,510	45,841	217,051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정책과 윤정옥 (☎ 02-3153-8883)

참 고 자 료

1. 관계법규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마포구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2026 / 9 현재)

등급	장애인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 (지적,자폐)	기타
계	12,110	4,705	1,217	1,399	1,936	1,216	1,637
심한	4,596	905	657	319	368	1,216	1,131
심하지 않은	7,514	3,800	560	1,080	1,568	0	506

3. 보조기기 실물

